

2011. 3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제천시
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

발의자 : 이정임 의원 (서명 )

외 2인

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이정임	이정임	
오선근	오선근	
전철성	전철성	

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번호	1502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3. 9.
발의자 : 이정임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현 조례중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임기로 착오 제정되어 조문에 적합하게 위원의 임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상심의회”를 각각 “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“본청 관련 담당관, 과장 1인”으로 한다.
-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의 제목 중 “보상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붙임 : 1.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.

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상심의회”를 각각 “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본청 관련 담당관, 과장 1인

제10조의 제목 “(보상심의회 기능)”을 “(심의회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보상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)”를 “(심의회 위원의 임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”를 “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상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보상심의회 회의)”를 “(심의회 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상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직무로 인한 사망,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(이하 “보상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본청 관련 실장, 과장, 담당관 1인 3.~4.(생략) ③ (생략) 	<p>제9조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(이하 “심의회” - - -) - - - .</p> <p>②심의회 - 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본청 관련 담당관, 과장 1인 3.~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p>제10조(<u>보상심의회</u> 기능) <u>보상심의회</u>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~ 4. (생략)</p>	<p>제10조(<u>심의회</u> 기능) <u>심의회</u> - - - - - - - - - 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<u>보상심의회</u> 위원의 임기) <u>위원회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1조(<u>심의회</u> 위원의 임기) <u>위원</u> - .</p>
<p>제12조(<u>보상심의회</u> 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<u>보상심의회</u>의 직무를 통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<u>심의회</u> 위원장의 직무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심의회 - - - - 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<u>보상심의회</u> 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<u>심의회</u>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심의회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